

# 정 보 공 개 서

[프라우송]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24038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3.1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3.12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90길 12, 1층 , 4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10-4153-541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10-4153-5415

# 목 차

T /LIN P P 01 01 pp 63 of	
I. 가맹본무의 일만 연황 ···································	••••
<b>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b>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V. 기 3 급시 답시의 구급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 기용단구의 용용 및 용법들은 용해 최근 지원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IX. 가맹몬무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Frausong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90길 12, 1층 , 4층 (괴전동)				
프라우송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2021년03월31일	정우혁	010-4153-5415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		403	-54-00411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 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Frausong	케이크 및 커피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상 호	Frausong OO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이나 입점하는 건물명을 사용하여 가맹점 명칭을 부여합니다.
상표(서비스표)	Frau Song	상표출원번호: 제40-2015-0092945호 상표등록번호: 제40-1199732호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	-	-
2022년	9,002	8,472	529	216,588	43,992	46,529
2023년1)	-	-	-	502,682	-	-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여어교기	аг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영업표지	연도	매출액	상한	하한
	2021년	-	-	-
Frausong	2022년		-	-
	2023년	-	<u>-</u>	-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근단에구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우혁	대표	2021.03 ~ 현재	프라우송 대표	가맹사업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sup>1) 2023</sup>년 재무제표는 202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여 별지1를 통하여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합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3년 12월 31일	1	-	3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및등 록신청여 부(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T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2016.08.31.	등록 제 40-1199732호	정우영	2026.08.31
DIETARTI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록	3   V   10 113373E	0,0	1020.00.31

<sup>◆</sup> 사용권자 프라우송 대표자 정우혁은 상표권자 정우영에게 상표권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용기간: 2024.0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 상표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п. 가맹본부의 [Frausong] 가맹사업 현황

# 1. [Frausong]을 시작한 날: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21.03.31)

# 2. [Frausong]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프라우송	Frausong	정우혁	가맹사업 예정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90길 12, 1층 , 4층

# 3. [Frausong] 업종

영업표지	업종					
Frausong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디저트 , 커피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Frausong]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1.04		2021.12.3°	l.	2022.12.31.			ı	2023.12.3°	l.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1	-	1	1	-	1	1	-	1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Frausong]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_	-	-	-	-	-
2022	-	-	-	-	-	-
2023	-	-	-	-	-	-

# 6. [Frausong]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Frausong]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맠	2023년 연간 평균 매출액 말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² 당	
전체	-	-	-	-	-	-	_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ı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_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_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를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Frausong]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Frausong]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해당사항	없습니다.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Frausong] 가맹점 관리를 위한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Frausong]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구분 수단 기간		(단위: 친	지출 비용 <sup>년</sup> 원, 부가세	비고	
, =	. –	. –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
합계	-	-	-	-	-	
광고			21,600			
판촉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 신한은행 ]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053-962-8302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작성된 예치신청서를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 까운 신한은행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 후 www.shinhan.com 에 접속하여 공인인 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상단의 '뱅킹-기업뱅킹' 클릭 후 '기업지원서비스' 클릭 후 하 위 메뉴 '가맹금 예치제도'에 접속하여 가맹금 예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 신한은행 ]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Frausong]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9,900				
가맹비	3,300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브랜드 재산권 - 가맹점운영권 사용 허락 -가맹점 운영 정보 제공 및 개점 지원
교육비	6,600	가맹계약 체결 시	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개점 전 조리/ 서비스/운영 교 육

#### 2)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 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 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계약 종료일 또는 해 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계약이행보증금으

_			
			로 잔존 채무손해배상
1		ПО	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1			상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2,900
가입비	3,300
교육비	6,600
계약이행보증금	3,000(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89,800	2,800			홀매장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56,000	2,800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66㎡(20평) 기준
간판 및 사인물	지정업체 (미정)	5,500	-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25,000	-	물품 공급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POS 기기	(협력업체)	임대	-	협의	설치 전 계약취소	
상품 및 원·부재료	가맹본부/(협력 업체)	3,300	-	오픈 3일 전	개점 전 계약취소	주요 식자재등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시공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별도비용 : 철거, 전기증설, 소방, 냉난방, 가스가설공사, 화장실 공사, 각종 가구류, 간판 등 견적 외 품목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만원(3.3㎡당 금액/VAT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공사 시작 전 3일 이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보건증 발급 가능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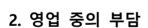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Frausong]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8) 가맹점 등 분납 제도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1) 비용 부담2)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사	165	매월5일	미반환		

<sup>◈</sup>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광고분담금	당사	가맹본부50% 가맹점사업자50%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광고 미집행	광고 집행	가맹점사업 자에균분
pos 사용료	(협력업체)	16	협의	설치전	설치후	임대 렌탈비용
판촉분담금	당사	협의  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 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판촉 미집행	판촉 집행	판촉물 수량에 따라 책정 납부
개점 후 교육비 (보수교육)	당사	실비	교육실시 10일 이전	교육미실 행	교육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정업체 (미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변경 완료 5일전	변경 전	변경한 후 반환 불가	Ⅶ-1참조
제조물 책임보험 화재보험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

#### 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분기별 1회	문의: 운영팀
세포인디	재고와 비교	군기 <u>월</u> 1외	(전화: 010-4153-5415)
히게처리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1년 1회		문의: 운영팀
외계시니	회계 조사 실시	1건 1최	(전화: 010-4153-5415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 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요구에 의하여 점포를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용은 해당 사유를 감안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

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Frausong]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6p)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가맹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비,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설비 및 당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매 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 ② 또한,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운영매뉴얼 등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만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시설물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종료 이후에는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 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Frausong]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집기·인테리어 ·간판 및 사인물·기타·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 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 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단위 : 천원)		구분
- 군단	급극(단위)	상한	하한	丁正
1	당사는 2023년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Frausong]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 록 요구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Frausong]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지3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위생 수준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당사 브랜드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조리 기준에따라 제공할 것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별지3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거래상대방(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타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거대장내망별도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경쟁업체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3	상권에 따라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	본사공문발송 및 전화통지	당사와 귀하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기타사정의 고려, 권장 소비자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서면동의얻어야 한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6 2 전 년 6 년 1 년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또는 디저트 관련 음식료품을 전문으로	Frausong	해당 없음	
하는 가맹사업		에ሪ 따급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소재지 중심으로	<u>가맹계약서 별지</u> 에 영업지역 표시
반경1km(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 ①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특성,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 [해당 구]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집니다.
- ④ 가맹본부는 전항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르는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을"과 합의하여 영업지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Frausong'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Frausong]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구분
온라인	네이버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	치즈케이크	
홈쇼핑	NS홈쇼핑등	www.nsmall.com	시프케이그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50%	0%	5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38%

◈ 당사는 온라인 판매 품목으로 치즈타르트(케이크)만 취급하며, 베를리너 치즈타르트 한판 (600g) 선물포장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맹점에서는 베를리너 치즈타르트 조각(75g)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Frausong]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mark>결</mark>일로부터] [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1** ]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
○ [Frausong]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업종의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Frausong]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제34조 3항
ㅇ가맹점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호
ㅇ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ㅇ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o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존속기간 동안 경업하는 경 우	
o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의 양도 및 가맹점을 위 탁경영 하게 한 경우	
o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4조 3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6)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대·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문의: 운영팀 (전화:010-4153-5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 인 면담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 의 상속 계약 체결 (5일 소요) → 가 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 영을 시킬 수 있으 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 여야 함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Frausong]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커피와 디저트등을 판매하는 업종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 하지 않습니다.	문의: 운영팀 (전화:010-4153-5 415)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Frausong]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8시 ~ 오후 8시	주6일 이상	설 및 추석은 재량 휴무 각 지역별 협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특별한 제한 없음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매장 청결 및 근무자위생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필요시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Frausong]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광고		부담비율	보다 저치 비그	
구분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	광고비 50% 중 가맹점사업자간에 균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모 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공동판촉 활동	협의	협의 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 전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기타 개별행사	행시	에 따라 유동적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가맹점사업자 전원에게 균분하여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손해배상 위약벌 사유 등	계약
	조문
귀하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가맹본부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b>금오천만원(\(\)</b> *5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진다.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20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21조 (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b>금오천만원(\(\)</b> *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b>금 오백만원(\(\)</b> *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계약 종료 후에도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위반일로부터 <b>1일당 금삼십만원(₩300,000)</b> 을 "갑'에게 <b>위약금</b>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제37조 1~8항
<ul> <li>가맹계약의 체결 이후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li> <li>1.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요식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li> <li>2. 가맹사업의 동일화 및 활성화를 위해 영업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li> <li>가맹본부는 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 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li> <li>당사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 측에 그 배상책임이 있다.</li> </ul>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필요시 실시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필요시 실시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필요시 실시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 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인테리 장비, 인테리 당의 작관적 의 등의 객관적 의 가 로 경이 보고 한의 인하의 인하의 어렵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용 ○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 하게 가맹점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 개선: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환경개선: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경우 가맹본부 잔여 기간에 부담액 하는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걸쳐 가맹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
	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 담 액 의
	30%, 3차 : 2
1	차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
	-  107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 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 명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요청시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Frausong]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Frausong]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문제 발생시 수시교육 안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양수 교육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보수 교육	가맹점 운영 정책의 변경, 가맹점 영업 활성화, 가맹점 고객서비스 개선, 가맹점 의견수렴 등	실습교육	사유발생시	기맹점사업자가 필요시 교욱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Frausong]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6,600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문제 발생시 수시교육 안내
양수 교육	1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필요 시
보수 교육	필요시간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 운영 정책의 변경, 가맹점 영업 활성화, 가맹점 고객서비스 개선, 가맹점 의견수렴 등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 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 이수시까지 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대구	프라우송본점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90길 12, 1층 ,4층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 9개월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02,682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을
	<mark>근거로 하</mark> 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지1)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2) 원,부재료 모든 품목에 대한 거래형태 및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3)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받는 판매상품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